

Mercedes-Benz Financial

www.mercedes-benz-financial.co.kr

리스 약 관

금융감독원 신고수리일자 : 2016.05.12

리스용어(이하 "리"라고 함) 및 그 연대보증인은 일련 계약서 기재사항과 세부사항중 조건으로 명세되어 반드시 기재된 코피어 추시사항(이하 "항목"이라 함)과 차량 리스를 신청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서 기재사항과 30 일 이내에 합의된 계약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동의한다. 또한, 본 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우"의 서명/인사/인장을 확인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을 동의한다.

[제1조] 리스 및 리스차량의 정의

1. "자동차(리"이하 "리"라고 함)란 함은 물이 깊어져 차량을 시달하여 하는 것으로 같은 직적 리스 차량을 신청하고 당해 차량을 리스기간동안 신차로 관리하는 우의 의무를 동시에 갖게 최종의 상태에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여 예산보증금합산금의 사용 대우를 받는다.
2. "리스차량"이란 계약서 기재 2조 2항에 의거한 차량을 용이한 기간으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리스 계약(이하 "리스 계약")에 의거한 차량자를 의미하며, 인도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

[제2조] 갑의 책임

1. 갑은 리스차량의 책임 하에 차량의 제조사 또는 공급자(이하 "제조사"이라 함)를 선정하고 차량의 종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 조건을 결정한다.
2. 리스차량 차체에 대한 운전자책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은 제2항에 관한 기록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물론 리스차량의 하자담보책임 부담기간이 없다.

[제3조] 리스기간

1. 리스기간은 "갑"의 청약서와 "을"의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2. 리스기간은 "갑"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 이라고 함)이며, 리스행렬일은 "갑"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한다.
3. "을"은 "갑"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부터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리스기간 제 7조 3항 제 2항의 외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계약이 해지 되는 종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차량의 구입, 인수 및 등록

1. 갑은 자사 책임 하에 리스차량의 종류, 규격, 성능, 기능, 사양과 가격 및 매도인을 정하였으며, 물론 리스차량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할증이나 조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한다.
2. 차량의 인수 시 차량등록금으로부터 갑, 본인이나 인수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여 갑의 책임하에 대리인을 선정하여 인수를 수교 한다. 갑은 리스차량을 안전하게 인도받기 위하여 대리인에 대한 담보를 차량등록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며, 물론 인수의무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3.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리스차량을 인도 받은 즉시 차량에 대한 하자유무 검사를 하고 물에게 차량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리스차량을 인도 받은 후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4.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제 3항의 차량 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차량의 부존재함을 이유로 리스조 지급 의무 및 기타 계약상의 채무의 행를 거할 수 없다.
5.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이 차량의 종류, 규격, 성능, 기능, 사양과 가격 및 매도인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에게 통지하고 차량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물론 리스차량이 출고된 즉시 리스차량을 물의 명의로 등록하고 "을"이 동의를 한 경우 "을"이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을"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등록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7. 제 6 항에서 "을"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8. "갑"이 차량등록금 및 "갑"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리스차량 등 제3자에게 재산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모든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9. "갑"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을"을 제 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0. 갑은 리스기간 개시전이라도 리스차량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신청한 권리자료서의 보관책임은 진다.

[제5조] 리스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

1. "갑"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물에게 발생한 경우 물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 1항의 경우 "을"은 인도지연에 제2항으로 동의하여 리스차량에 물 매도인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 등 모든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갑"은 리스차량을 수령한 경우 자동차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의 이행수행 수 없다. 다만, "을"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게도 사실이 있는 경우 "을"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의 과실로써를 청구할 수 있다.
4. "을"의 과실은 사유로 인하여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갑"은 그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고, "을"은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금원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면허료 등 "을"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같다.

[제6조] 차량의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1. 갑은 리스기간 중 리스 계약 및 본 약관에 정한 범위 따라 차량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다.
2. 갑은 차량의 취득권과 관련하여 물에게 어떠한 권리를 이유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물론 예산보증금합액 제 37조에 따라 리스 차량의 상태에 따라 리스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 리스차량이 물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리스차량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이 경우 리스차량을 전부 반제할 때까지 이 표지를 물의로 제거 할 수 있다.
4. 제3자가 물권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에 인하여 물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갑은 물권이 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를 그 침해당하고 그 사실을 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물론 갑의 자동차 사용자권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스계약상의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2항에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7조] 리스료 및 기타 지급금

1. 갑은 리스료에 리스차량, 차량 리스료(리스조금) 및 월리스료를 계약서의 기재일 및 결제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2. 갑이 리스료에 추가하여 보험료 및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리스료 계약의 범위, 계약서 기재의 날짜(리스조금)와 리스의 월납액을 계약서 기재의 결제일 및 결제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3. 리스행렬일 현재 차량가격이 차량공급자의 가격변동률에 따라 리스계약 기재 차량가격에서 인상/인하할 경우 계약서 기재의 리스료도 이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론 갑에게 변동된 리스료의 개별 통보 및 갑은 리스차량 출고일 현재 리스계약에 기재된 리스료에 동의할 수 있다. 만약 출고일현재 리스차량 가격이 상승하여 리스료 상승을 발생 시키고자 하는 경우, 리스차량에 리스계약에 기재된 리스료에 동의할 것으로 간주한다.
4. 제 7조 3항에 따라 변경된 리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갑이 스스로의 귀책사유로 리스차량을 수령하지 않거나 변경된 리스계약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은 본 약관 제 22조 및 제 23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5. 갑이 리스차량을 수령한 후 리스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과료와 비용을 부과받은 경우, 물론 다른 각호의 방법으로 갑이 이 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6. 리스차량에 오손상을 통한 납부차 변경신청
나. 납부금 등 부과 후 최초 대리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다. 납부금 등을 납부하도록 갑에게 통보
6. 납부금 등을 납부하도록 갑에게 통보

[제8조] 리스보증금

1. 갑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기재의 보증금을 본 계약 체결 시에 현금으로 물에게 지급 하며, 물론 리스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1조 또는 제 18조에 따라 본 계약에서 중도해지 되거나, 갑이 본 계약서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물론 리스보증금을 물이 정하는 절차와 기한 후 갑에게 반환한다.
3. 정항의 리스 보증금은 갑이 인정한 리스료를 포함하는 갑의 용에 관한 본 계약서상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에게 출당할 수 있으며 물론 수교 및 제반 은행, 연체이자, 연체해금, 이자, 원금 등의 손사로 출당 할 수 있다. 다만 갑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중당 손해를 물리 할 수 있다.
4. 갑은 보증금을 이유로 물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다.
5. 보증금은 갑의 용에 대한 채무 담보로서 가압류 등 제3자의 채무보전지급 시 당사 채무에 유할 수 없다. 이는 리스기간 종료시에도 갑의 용에 대한 채무 담보로서 적용된다.
6. 물은 리스보증금 60만원을 물의 이권이 실효된 후 90일간 혹은 본인이 원하면 후 60일간 반환하며, 그 60일간 이 권리 물에게 청구된 모든 보증금과, 고액률, 제세공과금 등에 해당하는 총당 리스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중당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하기로 한다.

[제9조] 리스인상금

1. 갑은 리스 보증금을 경감하기 위해 물에게 리스 실행일 이전에 차량 가격의 일부를 리스기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은 리스보증금의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한다.
2. 리스 실행일 이후에도 신납금을 물에게 부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론 신납금도 미청구계좌입금으로 공제해당함을 물의 리스료에 출당하기로 한다. 다만, 리스 실행일 이후에 갑이 신납금을 지급하는 경우, 물론 신납금도 자동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계산한다.
3. 제23조에 정한 규정준수율을 적용한 수수료율 징구를 수 있다.
4. 물은 계약이 종료에 해당 되는 경우 제2항의 신납금 중 리스료로써 징구하지 않은 금액을 제23조에 따른 정산차액을 기한 후 갑에게 반환하 고한다.

[제10조] 유예금

1. 갑은 리스보증금을 경감하기 위해 물의 승인 하에 리스 실행일 이전에 차량가격의 일부를 리스기간 만료 시까지 납입 유예할 수 있다. (이하 "유예금"이라 함)
2. 갑은 제 1항의 유예금을 리스기간 종료(만료 또는 중도해지)를 포함한다시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단, 갑이 제2항을 선택하는 경우, 제 23조에 따르기로 한다.

[제11조] 리스차량유지, 비용 및 제세공과금

1. 갑은 리스차량이 항상 안전 운행정태를 지속하고 안전한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하여 리스차량의 사용, 관리에 관한 권면 제언(유지사항지침, 점검기록지, 차량공급자의 시차 등을 실시)을 준수해야 한다.
2. 물론 리스기간 중 연체연료 값이 전 항의 리스료를 초과할 수 있으며 물의 요청시 이를 물에게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
3. 리스차량 및 리스차량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같은 조에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만약 물이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배상금과 그에 따른 제25조에 의한 지연변제금들을 물이 청구하는 즉시 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비용,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는 보험과 제세공과금과과료와, 부과 포함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5. 리스기간 및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세공과금과 같은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및 등록 비용, 폐차 등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공제대상은 물이 인정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과료와 및 부과금을 말한다.
6. 리스 실행일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 제정, 시행령정지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유지, 사용 및 운행정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등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발생되는 금액은, 납부자의 명의로 물이라 하여도 갑이 주기로 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물이 다른 지급유형에 해당하는 때에 물이 청구하는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급회차량

1. 갑은 물의 사전 서면통의 없이 리스차량의 제조 및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할 수 없다.
2. 갑은 물의 사전 서면통의 없이 리스차량 또는 리스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 임대하거나 팔수없을 것, 저당권 설정, 기타 사항 등으로 담보 제공하지 못하며, 기타 물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갑은 차량인도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이외의 제3자에게 하거나 리스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4. 갑은 제 6조 3항에 따라 리스차량에 부착된 표지 또는 부착물과 그 내용 및 부착처와 등 변경할 수 없다.
5. 갑은 제3자에게 리스차량에 대한 강제집행, 기타 법률 및 사실상의 소유권 정황에 의도록 출증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긴급 회집과정을 밟도록 하도록 하도록 조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6. 물이 전 항의 리스에 대하여 필요한 조항을 위한 때에는 같은 물이 지급한 모든 비용과 그에 따른 제25조에 의한 손해배상 및 지연변제금들을 물이 청구하는 즉시 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리스차량에 대한, 질 및 손해
1. 본 계약에 있어 차량의 질 및 손해 책임은 운전자책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단지 차량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의 자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차량의 질 및 손해 책임은 리스계약에 포함되는 리스료와 "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정산금인 인도를 제외하고 차량의 일부가 훼손되었을 때 "갑"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변경 없이 존속한다.

3. 리스 차량이 도난, 멸실 또는 수리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되었을 경우, 갑은 지체없이 물에게 통보하고 갑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이 리스차량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에 "갑"과 "을"이 체결한 경우, "을"은 리스차량에 대하여 리스 기간 동안 "을"을 보험 계약자로 하고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당해보험금에 "을"이 포함되면, 그 사본은 "갑"에게 교부하고 "을"을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절차자로 삼았하기로 한다.
2. 제 1항의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은 리스계약에 기재된 보험료를 월 리스료와 함께 매월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 부보방법, 보험가입에 따른 절차는 "을"이 정하기로 한다. "을"은 "을"이 정하는 보험사 또는 다른 보험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갑"은 물의 요청에 따라 리스계약에 기재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에 따라 리스계약에 기재된 보험료는 갑은 "을"을 "갑"에서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반환을 할 수 없다. 또한 보험료 정산은 경기지역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록에 명시된 경우 "갑"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5. 만약 제 4항에 따라 보험이 해지된 이후 "갑"이 리스차량 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의 손상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갑"이 수령하고 "을"의 손해에 따라 차량의 수리비용 또는 차량의 멸실 등으로 인한 "을"의 손해액을 출당할 수 있다.
7. 리스기간 중의 리스료 또한 인손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갑"의 귀책 사유로 "을"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을"을 "갑"으로 인하여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용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부

1. "을"이 리스차량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에 "갑"과 "을"이 체결한 경우, "갑"은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 기간 동안 "을"을 보험 계약자로 하고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당해보험금에 "을"이 포함되면, 그 사본은 "갑"에게 교부하고 "을"을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절차자로 삼았하기로 한다.
2. 제 1항의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은 리스계약에 기재된 보험료를 월 리스료와 함께 매월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 부보방법, 보험가입에 따른 절차는 "을"이 정하기로 한다. "을"은 "을"이 정하는 보험사 또는 다른 보험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갑"은 물의 요청에 따라 리스계약에 기재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항에 따라 리스계약에 기재된 보험료는 갑은 "을"을 "갑"에서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반환을 할 수 없다. 또한 보험료 정산은 경기지역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록에 명시된 경우 "갑"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5. 만약 제 4항에 따라 보험이 해지된 이후 "갑"이 리스차량 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의 손상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을"이 수령하고 "을"의 손해에 따라 차량의 수리비용 또는 차량의 멸실 등으로 인한 "을"의 손해액을 출당할 수 있다.
7. 리스기간 중의 리스료 또한 인손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갑"의 귀책 사유로 "을"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을"을 "갑"으로 인하여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3조] 갑에 의한 보험료리

1. 리스차량에 대한 보험료 "갑"의 책임하에 "갑"의 비용으로 기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에 "갑"과 "을"이 체결한 경우, "갑"은 리스기간에 대하여 "을"이 정하는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의 전 항목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만해제 주지 않는 한, 초내년에는 신차보험 가입하고 추정전손책임을 하는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리스기간동안 추정전손책에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 1항의 경우, "갑"은 "을"을 권장자로 삼았하여 하며, 보험 가입 및 갹신 시점에 기한 모든 갹신을 증명하는 증빙 또는 영수증을 물에게 제시 하고 유예금(손해)에 대해 동 지급이 수반되었을 경우, 물론 지정보험사 갑의 보험을 기한 모든 증명자료 할 수 있다.
3.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을"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갑"이 지급하거나 하고, 보험사, 부보 방법 및 절차는 "을"이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의 승인 하에 보험회사, 부보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만약 "갑"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물에 인하여 "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갑"은 그 날 보험료 및 그에 대한 보험료에 정한 제세공과금으로 신차한 지연변제금을 "을"이 정하는 즉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급 기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용에 발생한 민 행사건의 손해는 "갑"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5. 보험 가입일 당 보험금 지급 기한 사유 등 리스계약의 인정을 재확인 하는 시점(합계된 시에는 "갑"은 "갑"에게 스스로 물에게 통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스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러한 통보를 물에게 서면 통지할 수 있다. "을"은 유예금에 따라 하고, 보험이 해지된 후 과다한 통은 "갑"이 부담해야 한다. "갑"은 또한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준수율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6.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차량의 손상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을"이 수령하고 "을"의 손해에 따라 차량의 수리비용 또는 차량의 멸실 등으로 인한 "을"의 손해액을 출당할 수 있다.

[제14-3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반환

1. 제 14-1조의 1항의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인된 보험요율로 확정되고, 부가기간 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이내 매년 갹신한다. 갹신되는 시점은 "갑"의 사고정도가 갹신되는 관련법규의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되며, 보험요율은 "을"이 이 정한 방법하에 물의 명의로 갹신하여야 한다.
2. 사고 제 2항의 갹신시점의 보험요율이 적용된 보험료와 리스실행일의 보험요율이 적용된 보험료와의 차액은 갹신시점으로부터 도래할 때까지 납입되어 "을"이 그 증가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은 "을"이 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4. 리스기간 중 보험금 등 보험의 조건을 변경시킬 필요없고 "을"이 인정한 "을"이 정하는 갹신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5. 리스기간 중 보험금 등 보험의 조건을 변경시킬 필요없고 "을"이 인정한 "을"이 정하는 갹신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6. "갑"이 보험금 청구일에 물에게 통보한 경우 "을"은 "갑"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판단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보험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계없이 "을"은 "갑"에게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4. 보험금의 수령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 14-1조 및 14-2조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의 이해 지급을 보험금 중 리스차량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 받은 보험금에 제외한 보증금은 "갑"이 수령하기로 한다.
2. 제 1항에서 정한 지급의 기한이 만료된 때에는 갹신손해금 "을"이 수령한 후 "갑"이 리스차량에 대한 각종 이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고 하며, 동 지급을 반환할 경우에는 제 13조의 반납방법(차량사기 감지용 장치시 갹신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한다.
3. 리스차량에 화재, 멸실, 도난 등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하지 않는 범위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을"의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리스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을"은 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을"의 손해에 따라 지급된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① 제13조 적용에 의한 손해배상
②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제3자에 인한 손해배상
③ 기타 리스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손실
5. 리스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리스차량이 훼손, 멸실, 도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갑"은 "을"을 "갑"으로 인하여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갑"이 보험금 청구일에 물에게 통보한 경우 "을"은 "갑"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판단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보험처리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계없이 "을"은 "갑"에게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7. 기타 보험금 청구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 리스료 포함 제세 공과금의 범위

차량의 사용 및 운행정과 관련하여 제세 공과금을 리스료에 포함하는 리스계약에 "갑"과 "을"이 체결한 경우, 리스실행 이후 발생한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하여 제세공과금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제세 공과금의 변동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도래하는 첫 리스료 납입일에 그 증가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감소분은 반환하기로 한다.

[제17조] 차량의 중도지급

1.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에 대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본약관8조 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아무런 통지나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갑"이 무단으로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등 임의적 행위를 한 경우
② "갑" 또는 "갑"의 연대보증인이 "을"에게 별도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인질, 가압류, 가처분,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사법절차의 착수가 있는 경우
③ "갑"이 사법, 공판, 강제집행의 신청을 받거나, 3개월 이상의 형집행을 당한 경우
④ "갑"이 본 계약 및 관련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그의 부보방법을 제출한 경우
⑤ "갑"에 대하여 조세공과금 부과 또는 리스료 이음공과금의 과다징정 처분을 하거나,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 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지급정지 행태
⑥ 해산, 도파, 파산, 회생절차의 시정등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⑦ "갑"의 사망, 파산, 실종선언 등 지급정지 사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절차가 개시되거나 "을"이 사망, 파산, 실종선언 등 지급정지 사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절차가 개시되거나 "을"이 사망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본 계약의 효력과 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⑧ "갑"이 사망, 공판, 강제집행의 신청을 받거나, 3개월 이상의 형집행을 당한 경우
⑨ "갑"이 본 계약상 규정된 리스보증금 지급 또는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⑩ "갑"이 본 계약상 규정된 연대보증인을 제공하지 않거나 "을"의 요청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추가, 교체를 정지하지 못한 경우
⑪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약관에 해한 경우
⑫ 본 계약의 약속이 무효인 정도로 본 계약서(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 서면통지)를 작성하여 정한 금지행위, 비 유행 행위, 위약 등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본 계약의 범용성으로 부가되어 해지된 경우, "갑"은 "을"에게 발생한 사유에 관련하여, 리스차량의 처리방법에 따라 중도해지수 수 또는 규정준수율을 지급하는 외에 "을"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갑에 의한 차량의 중도해지

"을"이 정한 차량의 중도해지할 때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갑"은 해지 최고 기한동안 "을"이 정한 차량의 중도해지 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단 해지계약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일까지 리스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2. "갑"이 리스차량의 등록 후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3. 본 계약의 해지 후 차량의 등록, 전세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은 "을"을 "갑"이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일체의 비용과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기타의 지연변제금등의 이자, 후속 차량에 대한 이자, 후속 차량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금 청구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리스기간 중 차량이 도난, 전손된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자에게 리스계약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한다.
5. 본 조에 따라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을"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 및 전 손 수수료는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해당 리스보증금 또는 전손수수료로 출당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제28조 정산사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19조] 차량의 종류, 리스차량의 반납 및 구제, 제리스

1. 본 계약이 정산사항에 관한 경우, "갑"은 운용리스인 경우 차량의 반납, 구제, 제리스 중 택일해야 하며 금액리스의 경우, 구제, 제리스 중 택일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30일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2. "갑"이 차량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은 운용리스의 경우 반납, 구제 중 택일하여야 하며, 금액리스의 경우 구제당 함을 요구한다. 이 경우, "을"은 리스기간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 없고, "갑"은 리스기간 중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안고 있다.
3. "갑"은 차량의 반납 시, 차량의 종류, 규격, 성능, 기능, 사양, 가격 및 매도인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에게 통지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5.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6.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7.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8.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9.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10.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11.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12.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13.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14.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15.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16.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17.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18.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19.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20.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21.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22.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23.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24.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25.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26.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27.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28.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29.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30.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31.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32.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33.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34.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35.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36.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37.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38.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39.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40.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41.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42.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43.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44.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45.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46.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47.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48.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49.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50.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51.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52.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53.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54.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55.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56.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57.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58.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59.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60.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61.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
62. "갑"은 리스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물론 매도인의 차량등록도 여부를 확인한 후 리스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리스행렬 종료로 간주한다